

1. 개정이유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시험·검사의 비밀성 보장 및 시험 수행자 독립성 강화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2. 주요내용

가. 규정 적용대상 명확화를 위해 “시험 수행자” 정의 신설(제2조)

나. 시험 의뢰인 동의가 없이 의뢰받은 시험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제5조의2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시험”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위생공학적인·물리학적·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검사·분석·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
 - 가. 대기오염물질
 - 나. 소음·진동
 - 다.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 라. 하수·오수·분뇨
 - 마. 상수원의 원수(原水)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및 먹는샘물등
 - 바. 수처리제(水處理劑)
 - 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 아.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電池類)

자.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중 잔류농약

차. 유독물시험

카.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 함유량

타.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를 말한다)

파.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하. 자동차연료·촉매제 또는 첨가제

거. 그 밖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2. “시험 수행자”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근로자(국립환경과학원의 장 제외)로서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험 수행 시 준수사항) ① 원장 또는 시험 수행자는 제3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시험의 수행 결과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 수행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u>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 · 위생공학적 · 물리학적 · 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 · 검사 · 분석 · 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u> <u>1. 대기오염물질</u>	제2조(정의) <u>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 <u>1. “시험”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 · 위생공학적 · 물리학적 · 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 · 검사 · 분석 · 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u> <u>가. 대기오염물질</u> <u>나. 소음 · 진동</u> <u>다.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u> <u>라. 하수 · 오수 · 분뇨</u> <u>마. 상수원의 원수(原水)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및 먹는샘물등</u> <u>바. 수처리제(水處理劑)</u> <u>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u> <u>아.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電池類)</u>

2. 소음 · 진동

3.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4. 하수 · 오수 · 분뇨

5. 상수원의 원수(原水)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및 먹는샘물등

6. 수처리제(水處理劑)

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8.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電池)

자.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중
잔류농약

차. 유독물시험

카.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
함유량

타.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
조장치를 말한다)

파.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
음

하. 자동차연료 · 촉매제 또는
첨가제

거. 그 밖의 환경오염과 관련
된 사항

2. “시험 수행자”란 국립환경과
학원 소속 근로자(국립환경과
학원의 장 제외)로서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類) 9. <u>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중 잔류농약</u> 10. <u>유독물시험</u> 11. <u>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 함유량</u> 12. <u>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를 말한다)</u> 13. <u>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u> 14. <u>자동차연료·촉매제 또는 첨가제</u> 15. <u>그 밖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u> <u><신 설></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제5조의2(시험 수행 시 준수사항)</u> <u>① 원장 또는 시험 수행자는 제3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시험의 수행 결과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u> <u>②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 수행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u>
---	--